

공

고

◎ **평택해양경찰서 제2021-01호**
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(출입통제 등)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2021년 3월 3일

평택해양경찰서

출입통제장소 지정 공고

□ **출입통제구역 지정**

- 지정사유: 바다 수영 활동자 안전사고 예방
- 소재지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구봉도 주변 해상
- 지정일: 2021. 4. 1.
- 기간: 연중
- 통제시간: 야간시간(일몰 후 30분 ~ 일출 전 30분) 및 기상특보 발효 시
- 대상: 모든 수영 활동자
- 벌칙: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
- 범위

① 북위 37°17'00", 동경 126°33'30", ② 북위 37°16'30", 동경 126°33'00"
③ 북위 37°17'15", 동경 126°31'30", ④ 북위 37°17'45", 동경 126°32'00"
위 각 호(① ~ ④)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해역

